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가단50161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정한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창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수현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6. 27.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38,344,85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344,8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 1) 원고는 파산자 D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C 및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17.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15030호로 C 및 E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 2) 위 법원은 2017. 12. 5. ‘C 및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52,853원 및 그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0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는 2018. 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는 2020. 6. 27. 사망하였고(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G이 공동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 2) 피고, C 및 G은 2020. 6. 27.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 22.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H조합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성립한 이후인 2020. 8. 1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 4) 피고는 2020. 8.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C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C가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C는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기여분 관련 주장

가)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피고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인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과 피고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택인 점, ③ 망인과 피고는 50년이 넘는 기간 부부로 생활을 하였으며, 망인이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기까지 약 1년간 피고가 전적으로 간호 및 치료비를 부담한 점, ④ 장례비 등도 상당부분 피고가 부담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기여도가 상당하고, 이를 고려할 경우 C의 실제 상속분은 없거나 미미하므로, C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이 정한 기여분이 반영되어 법정상속분이 수정된 것)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지만, 이때 기여분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 대한 일반적인 부양의무 이행의 정도를 넘어 그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기여분 산정의 협의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채권이 약 17년 전에 있었던 대출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로서는 C의 위 채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 위와 같은 저당권 이외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 등에 따라 임차보증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참조).

나)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주택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일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수익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지분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다) 한편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 22.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성립한 이후인 2020. 8. 1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를 원래대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약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 13.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원리금의 합계는 38,344,853원(= 원금 6,000,000원 + 확정지연손해금 1,552,853원 + 2006. 12. 23.부터 2021. 1. 13.까지의 지연손해금 30,792,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0. 6. 2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2억 8,5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역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5,2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7. 9. 27. I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층 방 2칸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액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 2/7에 상응하는 공동담보가액은 52,285,714원[= 1억 8,300만 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2억 8,500만 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200만 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 있는 I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5,000만 원)× 2/7,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38,344,853원이므로, 원고는 그중 적은 금액인 38,344,853원을 한도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반환해야 할 금원 역시 38,344,853원이 된다.

4) 피고는 공동담보가액 산정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에서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8. 20. J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J이 2020. 10. 23.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성립한 이후인 2020. 8. 20.에 체결되었으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은 공동담보가액의 산정시 공제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한편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공동담보가액 산정시 적어도 1억 1,5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2. 9. 7.경 J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함으로써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성립할 당시 J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공동담보가액 산정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는 또한, C에게는 원고 외에도 다수의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채권자들 역시 채권 추심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할 경우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중 극히 일부의 돈만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38,344,85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38,344,8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훈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도봉구 K 대 126㎡

2. 서울 도봉구 K

벽돌조 슬래브 2층 단독주택

1층 62.85㎡

2층 62.85㎡

옥탑층 7㎡

지층 75.76㎡

(내역 : 지층 주택, 옥탑 연면적 제외임). 끝.

